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08
----------	-------

제출년월일 : 2022. 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생활 속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안전보안관 구성, 교육 및 임기, 활동(안 제3조 ~ 제5조)
- 다. 안전보안관 지원, 관리 및 해촉, 표창(안 제6조 ~ 제8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1) 입법예고 : 2021. 12. 16. ~ 12. 30.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

동합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소요됨

## 4. 작성자 : 도시환경국 도시안전과 강미연 (☎ 3153-9467)